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共有持分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 課稅免除에 관한 條例 廢止 改正案

##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1. 審 查 經 過 ..... 2
2. 提案說明要旨 .....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 3
4. 質 疑 與 答 辯 要 旨 ..... 3
5. 討 論 要 旨 ..... 3
6. 審 查 結 果 ..... 3

大田直轄市鐵道建設共有持登記에 따른  
登録稅 課稅免除에 관한 條例 廢止 改正案

##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 가. 鐵道建設事業의 원활한 推進과 鐵道敷地로 編入된 土地所有者의 財產權 保護를 위하여 鐵道建設事業으로 인하여 鐵道建設敷地로 編入된 土地를 確定 分割할 경우의 土地所有者가 登記하는 分割登記에 대하여는 登録稅를 條例로 定하여 課稅免除하였으나,
- 나. 地方稅法 施行令에 鐵道用地로 編入된 土地의 分割 登記에 따른 登録稅 免除 規定을 新設하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함.

###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案鍾贊)

- 本 廢止條例案은 鐵道建設 事業을 圓滑하게 推進하기 위하여 鐵道建設敷地로 編入된 土地를 分割할 경우의 登錄稅를 條例로 定하여 課稅 免除하였으나,
- 地方稅法 施行令에 鐵道建設敷地로 編入된 土地의 分割 登記에 따른 登錄稅 免除 規定을 新設하고, 또한 鐵道法 第 76條 第 3項에 土地制限으로 因한 財產權 損失을 國家가 報償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現行 條例를 廢止함이 妥當한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省 略

5. 討 論 要 旨：省 略

6. 審 查 結 果：原案 可決

## 大田直轄市 鐵道建設共有持分 分割登記에 따른 登錄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廢止條例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가. 鐵道建設事業의 원활한 推進과 鐵道敷地로 編入된 土地所有者의 財產權 保護를 위하여 鐵道建設事業으로 인하여 鐵道建設敷地로 編入된 土地를 確定 分割할 경우의 土地所有者가 登記하는 分割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條例로 定하여 課稅免除하였으나,

나. 地方稅法 施行令에 鐵道用地로 編入된 土地의 分割 登記에 따른 登錄稅 免除 規定을 新設하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함.

### 2. 參考事項

#### ○ 鐵道法

○ 第 76條 (鐵道線路隣接地域內의 土木採取等の 禁止 또는 制限 및 補償) ① 交通部長官은 鐵道保護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의하여 鐵道線路에 隣接한 일정한 地域내에서의 立木, 生나무가지, 落葉, 잔디, 土石, 나무뿌리, 풀뿌리나 나무껍질의 採取또는 採掘이라 경작또는 죽목의 식재를 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② 交通部長官은 列車의 安全運行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鐵道境界線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內에서의 建築 其他 工作物등의 設置. 增築. 增設 또는 改良을 制限하거나 그 점유자 또는 所有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國家는 策 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禁止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禁止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 補償한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 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 1조(목적) 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면제대상)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 분할할 경우의 토지 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조 (면제신청)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 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1700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 197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